

수수료 (제68조제1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한 검인·변경검인: 3천원

- 가.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
- 나.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
- 다.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
- 라.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

2.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정기검사 | 가.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| 배의 길이(m) | 45 미만 | 45 이상 70 미만 | 70 이상 100 미만 | 100 이상 140 미만 | 140 이상 180 미만 | 180 이상 |
| | | 금액(원) | 2만1천 | 3만4천 | 4만2천 | 4만9천 | 6만4천 | 7만7천 |
| | 나. 그 밖의 선박 | 총톤수(t) | 1만 미만 | | | 1만 이상 | | |
| | | 금액(원) | 1만5천 | | | 1만9천 | | |
| 제1종중간검사 | 가.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| 배의 길이(m) | 45 미만 | 45 이상 70 미만 | 70 이상 100 미만 | 100 이상 140 미만 | 140 이상 180 미만 | 180 이상 |
| | | 금액(원) | 1만3천 | 2만1천 | 2만8천 | 3만4천 | 4만5천 | 5만6천 |
| | 나. 그 밖의 선박 | 총톤수(t) | 1만 미만 | | | 1만 이상 | | |
| | | 금액(원) | 1만2천 | | | 1만3천 | | |
| 제2종중간검사 | 가.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| 배의 길이(m) | 45 미만 | 45 이상 70 미만 | 70 이상 100 미만 | 100 이상 140 미만 | 140 이상 180 미만 | 180 이상 |
| | | 금액(원) | 7천 | 1만 | 1만3천 | 1만7천 | 2만1천 | 2만8천 |
| | 나. 그 밖의 선박 | 총톤수(t) | 1만 미만 | 1만 이상 | | | | |
| | | 금액(원) | 9천 | 1만2천 | | | | |
| 입시검사 | 가.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| 배의 길이(m) | 45 미만 | 45 이상 | | | | |
| | | 금액(원) | 출입검사 | 출입검사 1회마다 8천 | | |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1회마다 5천 |
| 나. 그 밖의 선박 | 금액 (원) | 출입검사 1회마다 7천 |

비고

- 가. 출입검사의 횟수는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출입검사시간을 1회로 하고, 출입검사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는 때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.
- 나. 임시검사의 수수료가 이 표에 정한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기검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다. 삭제 <2014.12.29.>
- 라. 삭제 <2014.12.29.>
- 마. 삭제 <2014.12.29.>

3.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: 3천원

4.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·검정

(단위: 원/1대)

| 설비의 종류 | 성능시험 | 검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기름여과장치 | 10만3천 | 4,500 |
|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| 10만3천 | 4,500 |
|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| 15만5천 | 7천 |
| 유분농도계 | 17만 | 10천 |
| 유량계·선속계 | 8만3천 | 4천 |
|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감시기 록장치 | 13만5천 | 6천 |
| 유수경계면검출기 | 9만3천 | 4,500 |
| 화물창세정기 | 5만2천 | 2,500 |
| 분뇨처리장치 | 11만5천 | 7천 |
| 분뇨마쇄소독장치 | 27만5천 | 9만4천 |
| 선내소각기·유화기 | 10만 | 4만2천 |

비고

- 가. 출입하여 시험 또는 검정하는 경우에는 출입 시마다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1회 4시간(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본다)을 단위로 하여 3만4천원을 징수한다.
- 나. 성능시험 또는 검정 수수료가 출입검사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입검사수수료를 징수한다.

5.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예비검사

가.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

(단위: 원/1대)

| 출력(PS) (kW) | NOx 실측을 하는 경우(표본기관) | NOx 실측을 하지 않는 경우(소속기관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500PS(367kW) 이하 | 3만6천 | 1만 |
| 1,000PS(735kW) 이하 | 3만6천 | 2만1천 |
| 1,000PS(735kW) 초과 | 3만6천 | 3만6천 |

나.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(단위: 원/1대)

| 단일 제품인 경우 | 동일 배기가스 유량을 가진 연속 생산품으로 인정 받은 경우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만6천 | 2만3천4백 |

비고

가.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발급수수료는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.

나.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동일 기관 측정 시 1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기 당 해당 표본기관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
6. 방오시스템검사

| 검사 종류 | 총톤수 1만톤 미만 | 총톤수 1만톤 이상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방오시스템검사 | 1만원 | 2만원 |
| 임시방오시스템검사 | 출입검사 1회 마다 5천원 | 출입검사 1회 마다 8천원 |

비고

가.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나.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출입검사 수수료 총액은 방오시스템검사 수수료보다 많아서 안 된다.

7.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: 4만9천원

가.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나. 휘발성유기화합물제어장치검사 시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출입 시 마다 선박검사관 한명이 하루 1회 4시간(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본다)을 단위로 하여 3만4천원을 징수한다.

8.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기물 배출률 승인: 3천원

9. 에너지효율검사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검사사항 |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증을 포함하는 경우 |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 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|
| 검사수수료 | 3만6천 | 8천원 |

비고

검사수수료와 별도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